

審 查 報 告 書

1999. 12. 22
總務委員會

1. 審查經過

가. 提出日字 : 1999. 12. 14

나. 提出者 : 瑞 山 市 長

다. 回附日字 : 1999. 12. 16

라. 上程日字 : 1999. 12. 22

2. 提案說明要指(提案說明 : 地域經濟課長文哲柱)

가. 提案理由

- 담보력이 미흡한 중소기업의 채무보증력 확충을 위한 지역신용보증조합의 재원확보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방비 확보에 동참함으로써 경제활성화에 주력하고 있는 국·도정 시책에 부응하고, 기초자치단체의 출연근거를 명확히 하고자함.

나. 主要骨子

- 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에 대하여 충청남도신용보증조합에 출연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(안 제6조2).

3. 專門委員 檢討意見 要旨

- 지난 '98. 10. 1일 개원한 충청남도 신용보증조합의 출연금에 대하여
 - '99. 9. 15일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충남신용보증조합 출연을 위한 시·군부담금 내역이 통보됨에 따라,
- 기금출연의 근거규정을 마련하기 위하여
 - 「서산시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설치및운용조례」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,
- 지방재정법 제14조제1항4호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금을 출연할 수 있으므로,
 - 동개정 조례안은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고, 담보력이 미흡한 중소기업의 채무보증력 확충을 위한 지역신용보증조합의 재원확보대책에 시·군 공히 동참하는 것으로써,
- 동조례에 「기금의 출연」 근거규정을 신설하는 것은 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됨.

4. 主要質疑 및 答辯要旨 : 생략

5. 討論 및 少數意見 : 없었음

6. 審查結果 : 원안대로 가결

의안 번호	제 124호
의 결 년 월 일	1999. 12. 24. (제 47회)

서산시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

제 출 자	서 산 시 장
제 출 년 월 일	1999. 12. 14.

서산시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살치및운용조례증기정조례안

의안 번호	제124호
----------	-------

제출년월일 : 1999. 12. 14
제출자 : 서산시장

1. 개정사유

- 담보력이 미흡한 중소기업의 채무보증력 확충을 위한 지역신용보증조합의 재원확보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방비 확보에 동참하므로서 경제활성화에 주력하고 있는 국·도정 시책에 부응하고, 기초자치단체의 출연근거를 명확히 하고자함.

2. 주요골자

- 가. 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에 대하여 충청남도신용보증조합에 출연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(안 제6조2)

3. 참고사항

○ 근거법령

- 지방재정법 제14조제1항제4호

○ 입법예고

- 서산시 공고 '99 - 313호('99. 11. 16 ~ 11. 26)
- 제출의견 없음

○ 예산관련

755백만원(경제살리기 특별기금 660백만원, 일반예산 95백만원)

○ 기타

- 충시협 13030-12('99. 8.31) 8월중 충청남도시장군수협의회 결과 건의
- 기업 55470-40('99. 9.15) 충남신용보증조합 출연을 위한 시·군부담금 통보

서산시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설치및운용조례증개정조례안

서산시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설치및운용조례증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6조의2(기금의 출연) 중소기업의 원활한 자금지원을 위하여 충청남도에서 설립 운영하는 충청남도신용보증조합에 출연할 수 있다.

제13조제4항제1호중 “산업건설위원회”를 “총무위원회”로 한다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